

민간경비원 권리보호 규정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

- 청원경찰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계원* · 서진석**

요 약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udy on the acceptance in Security Industry Act for the rights provis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etition Police Act -

Kye-Won Kim* · Jin-Seok Seo**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raw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esents the legal definition if need be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be established in Private Security Act the basic provisions that assure the economic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r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physical force or power in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duty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provision during the "displayed its pow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s too arbitrary interpretation, it must be deleted. Fourth, it must be established by weighting penalties for assault of a private security guards. Finally,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Petition Police Act has a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So it is not desirable to be directly applied to private security guards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the petition police.

Keyword : private security guards, protection of the rights,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Private Security Act, Petition Police Act, legal definition

접수일(2015년 10월 15일), 수정일(1차: 2015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2015년 10월 27일)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1. 서론

1953년을 현대적 민간경비의 시작이라고 볼 때, 민간경비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을 넘겼으며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민간경비는 업체수, 경비원수, 매출액 등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외면적인 발전 속에서도 민간경비의 핵심적 주제라 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의 열악한 지위향상과 권리보호 문제는 커다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열악한 지위향상과 권리보호 문제는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적극적인 정책관여의 여부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민간경비(또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경비원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2012년 발생하였던 컨택투스(CONTACTUS)사태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 컨택투스사태가 발생하자 방송과 언론에서는 일개 기업으로써의 컨택투스의 위법사실을 넘어 민간경비 전체를 마치 용역깡패 집단인냥 집중적으로 성토했고, 국민들은 이전의 용산철거현장참사를 연상시키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간경비원의 지위나 권리보호 문제는 입법 및 정책적 관심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당사자인 경비업체조차도 경영상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하였던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태를 계기로 민간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지위나 권리보호 문제에 대한 다소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당시 경비원 분신사태를 통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합리한 태도 등이 집중 조명되었고, 동시에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복지문제 등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업계나 학계 등에서 경비원의 지위나 권리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정부나 국회 역시 관련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가 경비원에 대한 약자로서의 감정적 접근에 지나치게 편중된 감이 있었고, 민간경비원의 지위향상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나 대책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비원의 권리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의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원의 처우문제와 폭행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민간경비의 인식개선의 단초가 구체적이고 강력한 경비원의 권리보호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 중 특수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2. 민간경비원의 권리와 의무

2.1 권리와 의무의 의의

2.1.1 권리 및 의무의 일반적 개념

국가나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의 존재이다. 흔히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관습법'이라고 정의된다.[1] 법의 목적은 결국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옹호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는 법익을 옹호함으로써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익을 침해할 막아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법의 지배를 받는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된다.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법익을 위해서 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고(적극적 의무), 법이 금하는 바를 행하지 않아야 할 구속(소극적 의무)을 받고, 타인의 행위를 인정할 구속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구속을 의무(義務)라고 한다.[2]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나 사회가 법익을 향수하기 위해서 주어

지는 힘이 있다. 이것을 권리(權利)라고 하는데, 때문에 권리는 법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하기 어렵고 권리는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 또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3]

권리와 의무는 원래 대응하여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개의 법률관계에서는 양자가 동시에 규정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의무만 있고 권리는 규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서는 후자와 같이 의무만 존재하고 권리가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어떠한 주체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는 대개 권리와 의무의 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하며[4] 영어로는 rights로 표기된다. 이에 비해 상대 개념인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으로 정의되며, obligation 또는 responsibility로 표기된다.[5] 한편 권리와 비슷한 용어로 권한(權限)이 있는데, 권한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네이버국어사전)로 정의되며, 영어로는 authority로 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한은 권리보장의 범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의 권리란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경비업법상의 관련 행위를 행하거나 관련자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반대로 경비원의 의무란 '경비업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2 권리 및 의무의 종류

2.1.2.1 권리의 종류

전통적인 권리의 분류방법에 의하면 일단 권리는 사권과 공권으로 구별된다. 그 밖에 사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 사회권도 권리의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6]

한편 Carl Wellman(1987)은 권리의 종류로 법적권리, 도덕적 권리, 기관(organization)안에서의 권리로 구분하고,[7] 제도라는 말을 광의로 쓰는 경우에는 세 종류의 권리 모두를 제도적 권리(institutional rights)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고 있다.[8]

여기서는 권리를 공권(公權), 사권(私權), 사회권(社會權)으로 나누는 시각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9]

① 공권

공권은 공법관계에 있어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10] 대개는 개인적 공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11] 공권은 공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적·정치적·국가적 생활에 있어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국내법상의 공권과 국제법상의 공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상의 공권은 국가공권(國家公權)과 국민공권(國民公權)으로 구분한다.[12]

여기서 국가공권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법인으로서 그 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지는 권리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국가공권은 그 작용에 따라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눌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조직권, 경찰권, 군 정권, 형벌권, 재정권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국민공권(개인적 공권)은 국민이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자유권(自由權), 수익권(受益權), 참정권(參政權) 등이 있다.

② 사권

사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로서 사적·시민적·사회적 생활에서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① 사권의 내용을 기준으로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인격권으로 분류되며, ② 사권의 작용을 기준으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③ 의무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④ 권리와 권리주체와의 긴밀도를 기준으로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나뉘며, ⑤ 권리의 주종관계를 기준으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분류하고 ⑥ 권리의 완성요건의 실현정도에 따라 완성권과 기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13]

③ 사회권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

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민생활의 보장이 국가의 책임으로 된 결과에서 생긴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결혼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2.1.2.2 의무의 종류

의무도 권리의 대응개념으로 공의무(公義務), 사의무(私義務), 사회의무(社會義務)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14]

① 공의무

공의무는 공법관계에서 존재하는 의무로서 국내법상의 공의무와 국제법상의 공의무로 구분하며, 국내법상의 공의무로는 국가공의무(國家公義務)와 국민공의무(國民公義務)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국가공의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국민의 자유, 평등, 참정, 수의 등을 보장하는 의무이다. 국민공의무란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는 의무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납세, 재판복종, 병역, 근로, 공용비용부담 등이 있다.

② 사의무

사의무란 사권에 대응하여 사법관계에서 존재하는 의무이다. 즉, 사인(私人)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통치관계에서 행동하지 않고 사법(私法)상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동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의무이다.

③ 사회의무

사회의무란 사회권에 대응하는 의무이다. 사회권은 사회법상의 권리인데 특히 노동관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됨으로써 이 때 사회의무는 사용자의 의무가 되며, 국가의 의무로서도 존재한다. 국민의 근로권에 대응하여 국가는 국민에 대해 근로기회의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사용자

는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와 정당한 쟁의를 인정할 의무를 진다. 한편 근로자도 사회권을 남용하지 않을 의무와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2.2 민간경비원의 권리와 의무

2.2.1. 민간경비원의 권리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개별 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비업법이 사법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임에도 일부 공법관계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권리보호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비원의 권리란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경비업법상의 관련 행위를 행하거나 관련자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와 일반적인 법적권리의 종류에서 주로 사권과 사회권에 관련된 권리의 내용을 토대로 경비업무의 성격에 맞게 경비원의 권리를 구분하여 보면 ① 신분보장, ② 경제적 지위, ③ 직무수행권한, ④ 권리구제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2.2. 민간경비원 의무

경비원의 의무 역시 경비원의 권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경비업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법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익을 위해서 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고(적극적 의무), 법이 금하는 바를 행하지 않아야 할 구속(소극적 의무)을 받고, 타인의 행위를 인정할 구속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비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현행 경비업법 제15조와 제15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의무와 일반경비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3 타 법규상의 권리 및 의무 관련규정 사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헌법은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추구권에서부터 제37조조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 국가에 의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에서부터 제38조의 납세의무, 제39조의 병역의무까지를 규정하고 있다.[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급여로 보고 있다. 한편 동법 제6장에서는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급여변경의 금지(제34조), 압류금지(제35조), 양도금지(제36조), 신고의무(제37조) 등을 규정하여, 급여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16]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에서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불심검문권(제3조), 보호조치권(제4조), 위협방생의 방지권한(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권한(제6조), 위협방지를 위한 출입권한(제7조), 사실의 확인권한(제8조), 경찰장비의 사용권한(제10조), 경찰장구의 사용권한(제10조의2), 분사기의 사용권한(제10조의3), 무기의 사용권한(제10조의4) 등 직무상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17]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계급 및 경과운용(제2조, 제3조), 인사위원회설치(제4조, 제5조), 승진(제11조), 보훈(제16조), 교육훈련(제17조), 복제 및 무기휴대(제21조), 정년보장(제24조), 고충심사(제25조), 징계절차(제25, 제26조), 행정소송청구(제28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기타 급여 등과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동법에서의 의무에 관하여는 거짓보고 등의 금지(제18조), 지휘권 남용등의금지(제19조)를 규정하고 있고, 기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18]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권리 및 의무와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률이다. 청원경찰법은 권리와 의무와 관련 먼저 청원경찰의 권리 또는 권한과 관련한 규정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와 권한(제3조), 청원경찰의 복무(제5조), 청원경찰의 징계(제5조의2), 청원경찰경비(봉급과 수당 등)(제6조), 보상금(제7조), 퇴직금(제7조의2), 재복착용과 무기휴대(제8조), 의사에 반한 면직(제10조의4), 당면퇴직(제10조의6), 휴직 및 명예퇴직(제10조의7)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에 규정하지 않은 일부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동시에 청원경찰의 의무에 관련한 규정으로는 직권남용금지(제10조),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제10조의2) 등이 있다.[19]

2.4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현황

2.4.1 경비원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권리보호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① 신분보장, ② 경제적 지위, ③ 직무수행권한, ④ 권리구제 및 보장 등 네 가지의 권리유형에 맞추어 살펴볼 때 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다른 법률에 맡겨 놓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2.4.1.1 신분보장

먼저 신분보장에 관련된 경비업법의 규정은 법 제2조(정의)의 규정이 유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¹⁾ 이 외에는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다. 여기서 법 제2조 3호는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경비원의 신분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고용행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1)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외에 신분보장과 관련된 징계절차, 휴직 및 명예퇴직, 퇴직 등에 관련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2.4.1.2 경제적 지위

경제적 지위보장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급여, 수당, 직무상의 질병 및 부상 등의 보상금 등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급여(봉급)와 수당, 직무상의 질병 및 부상 등의 보상금 등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경비원의 급여(봉급)와 수당, 직무상의 질병 및 부상 등의 보상금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2.4.1.3 직무상 권한

직무상 권한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권한범위/내용, 제복착용/무기휴대 및 사용권, 장비, 급여 및 대여품에 대한 권한 등이 있는데,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이 행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과 범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경비업법 제14조에서 특수경비원의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및 사용권에 대해²⁾, 경비업법 제16조의2에서 경비원의 장비에 대해서³⁾만 규정하고 있다.

2.4.1.4 권리구제 및 보장

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수단이나 절차, 징계에 대한 정당한 구제절차, 신분보장수단이나 방법 등과 관련한 경비업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무수행 중 상대방이나 불특정인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퇴직 등에 대해서도 계약관계나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2.2 경비원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

2)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3)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현행 경비업법은 권리규정과는 달리 경비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경비업법 제15조에서는 특수경비원의 의무로 명령복종의무, 경비구역이탈금지의무, 쟁의행위금지의무, 무기안전수칙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⁴⁾ 동법 제15조의2에서는 경비원의 의무로 위력/물리력 과시금지, 업무범위 외 행위금지 등을 규정하고⁵⁾ 있다.

3. 민간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권리와 의무규정 비교분석

3.1 개요

여기에서 비교분석 대상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규정의 비교이다. 물론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연월일이나 법적인 성격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 국가중요시설의 방이라는 안보상의 목적과 국가재정의 한계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되어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비해 경비업법은 산업계의 자체적인 경비수요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라는 정책적인 목적 하에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법적인 면에서 청원경찰은 경비시설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며, 일부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는 면에서 순수한 사법인 경비업법과는 성격상 차이를 갖는다.

그럼에도 경비원의 권리보호에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을 비교대상으로 한 것은 경비업 중 특수경비의 대상과 청원경찰의 업무대상이 동일하고, 업무의 성격 역시 시설경비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권리나 의무라는 면에서는 양자를 동일한 영역에서 비교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해서이다.⁶⁾

4) 경비업법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5)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6) 다만 양자가 성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결과를 동일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법의 취지나 보호이익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항목은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관련규정은 ① 신분과 경력보장, ② 경제적 지위보장, ③ 직무수행권한, ④ 권리구제 및 보장 등 네 가지의 권리구분 유형에 맞추어 살펴 보도록 하고, 의무관련 규정은 명시적 의무, 직무한계, 권한남용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비교분석항목

구분		세부내용
권리 관련 규정	①신분/경력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지위 • 채용 및 임용 • 징계절차 • 휴직 및 명예퇴직 등 • 퇴직/당연퇴직
	②경제적지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 및 수당 • 보상금 • 퇴직금
	③직무수행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상 권한범위/내용 • 급여 및 대여품
	④권리구제 및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절차 • 신분보장
의무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명시적 의무 ② 직무한계 ③ 권한남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 직무범위/직무의 한계 • 권한남용 금지

3.2 권리 관련 규정의 비교

3.2.1 신분/경력보장

당사자의 어떠한 신분은 직무상의 권한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사회적 인식이나 스스로의 자존감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일단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경비원의 신분이 '경비업 법인에 의해 고용된 고용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외에 신분보장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직무의 성격과 청원경찰의 지위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는 최소한 경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밖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의 인가를 요하는 임용과정(제5조), 법적 절차를 요하는 징계절차(제5조의2),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휴가 및 명예퇴직 절차(제10조의7) 등을 두고 있다.[9]

<표 2> 신분/경력 보장 규정 비교

경비업법	구분	청원경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신분 • 경비업법 제2조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경찰관/ 공무원 • 청원경찰법 제3조/제5조, 시행령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법인에 의해 고용된 경비원 • 채용→배치 	채용 및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법에 근거 청원주에 의해 임용과정을 거쳐 임용된 청원경찰 • 배치허가→임용→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과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징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 징계절차, 징계종류, 징계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과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휴직 및 명예퇴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 •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을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없음 • 배치폐지와 동시에 퇴직 • 근로기준법과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당연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3.2.2 경제적 지위보장

경제적 지위보장 면에서 현행 경비업법은 봉급과 수당, 각종 보상금, 퇴직금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경비업법에 의해서는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경비, 보상금, 퇴직금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청원경찰경비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 제6조 제1항은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라고 하고 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동법 제7조에서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청원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청원경찰법 제7조의2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퇴직금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물론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그 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간에 차이가 있지만 최저부담기준액이나 호봉, 수당기준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안정적일 수 밖에 없다.

<표 3> 경제적 지위보장 규정

경비업법	구분	청원경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에 관련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봉급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6조 봉급기준, 호봉, 지급방법, 수당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에 관련 규정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근로기준법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7조 직무상의 부상 및 질병 등 보상금의 내용과 지급방법,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에 관련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퇴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7조의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3 직무수행권한

경비원의 직무수행시 권한과 관련해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모두 제복착용(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모두 해당)과 무기휴대(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만 해당), 장비(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모두 해당), 급여 및 대여품(청원경찰만 해당)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의 직무수행시 가장 중요한 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경비업법에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에는 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일반 민간인과 동일하며, 경비원으로써의 특별한 권한은 전혀 없다. 이에 비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경찰

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범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이 직무수행 중인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물리력이 행사되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제재력 면에서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상 특별한 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될뿐이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등이 모두 성립된다. 따라서 권한의 효력 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갖게 된다.

<표 4> 직무수행권한 규정

경비업법	구분	청원경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상 특별한 권한 없음 법 집행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포권 없음 -압수수색권 없음 -불심검문권 없음 -개방집사만 가능 -외표, 수색검사 불가능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 -사실의 확인 제한 -근무중인 경비원 폭행시 형법상의 폭행죄성립 	직무상 권한범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3조 경비구역내, 직무범위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근무중인 청원경찰 폭행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 제14조 특수경비원에 한해 경비구역내에서 무기휴대 및 사용 가능 일반경비원은 해당 없음 	제목적용과 무기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8조 경비구역내에서 무기휴대 및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 제16조의2 법에 규정된 경비원 휴대장비의 휴대 및 사용가능 급여품과 대여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되지 못함 	장비, 급여 및 대여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8조 법에 규정된 청원경찰 휴대장비의 휴대 및 사용가능 급여품과 대여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음

3.2.4 권리구제 및 보장

권리구제 및 보장은 특히 경비원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이에 필요한 권리구제수단이나 법적인 징계절차, 신분보장규정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원경찰법은 직무수행중의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이 규정하는 구체절차를 인정하고 있고, 징계절차 역시 청원주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청원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청원경찰의 면직시킬 수 없도록 면직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신분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표 5> 권리구제 및 보장 규정

경비업법	구분	청원경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 없음 근로기준법과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권리구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직무범위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심사청구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 없음 근로기준법과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징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징계절차, 징계종류, 징계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없음 	신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 다라고 하여, 청원주의에 의한 자의적 면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3.3.1 의무 관련규정

의무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모두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비업법에서는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이 지켜야 하는 명시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남용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표 6> 의무관련 규정

경비업법	구분	청원경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경비원의 명령복종의무 -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 -쟁의행위금지 의무 -무기안전수칙준수 의무 등 경비업법 제15조의 2(경비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원의 위력/물리력 과시 금지 -업무범위 외 행위 금지 등 	<p>명시적 의무</p>	
	<p>직무한계 및 권한남용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다.

3.4.1 기타 권리보장 규정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규정 외에 경비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항이 경비업무 중 상대방 또는 불특정인으로부터의 경비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존재여부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경비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거나 제약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경비업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원경찰법의 경우 청원경찰에 대한 폭력에 대해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근무시간 및 근무지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무 중 청원경찰에 대해 가해진 폭력행위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력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일반인이나 고객에 의한 경비원 폭력에 대해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의 폭력죄가 단순히 적용되고, 그 만큼 경비원 대상 폭력에 대한 제재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4. 권리보호 규정의 경비업법 수용방안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연원이나 법적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나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규정을 경비업법에 단순히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양자의 직무성격상 공통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경비업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향후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급히 도입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경제적 지위 보장규정 신설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최소한의 보장규정을 경비업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보장항목인 봉급과 수당을 표준화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서비스업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자율적인 임금책정 시스템 하에서는 도급자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임금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어렵다. 다만 봉급의 호봉기준이나 내용, 그리고 최저부담기준액 등은 국민경제나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 7>과 같이 초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산업의 예를 고려하여 임의규정 형식의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여 일단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 7>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보장 규정

규정내용	비고
▶경비업법 제15조의3(경비원의 권리보호) 주관 관청과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과 다른 산업의 예를 고려하여 경비원의 봉급과 수당, 그리고 최저부담기준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2. 경비원 권한의 명확화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상징적이라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경비원은 일반 민간인과 다를 바 없으며, 경비원만의 권한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상의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국민이면 누구나 행사할 수 권한범위 내에서 일반국민들 보다 훨씬 큰 위협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법 감정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경비원만의 특별한 법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행위, 질문검색, 증거보전 등 최소수준에서 일반인들 보다는 좀더 확장된 범위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경비원 스스로 직업적 정체성이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경비원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표 8> 경비원의 권한 규정(안)

규정내용	비고
▶경비업법 제15조의4(행위의 면책 또는 감경) ① 경비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1. 경비근무 중 3회 이상의 퇴거 또는 불법행위의 중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비대상시설에 침입하거나 경비원에게 공격을 가하는 자에 대해 부득이하게 위해를 가한 경우 2. 경비근무 중 발생한 흉기 등을 이용한 급박한 공격행위에 대해 방어목적으로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4.3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화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서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위력과시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이 ‘위력의 과시’인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유형, 그리고 행위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경비나 경호행위는 그 성격상 위력을 내포하고 있는데⁷⁾, 실제 행위면에서 어떤 행위가 위력과시인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상대방의 공격적 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위력이나 물리력은 경비행위상 경비원자신의 생명과

7) 실제 제복경찰의 거리순찰 같은 경우나 제복착용 경비원의 순찰 등은 일종의 ‘위력순찰’ 개념으로 이는 경비행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감시행위나 순찰행위가 위력 과 결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금지하는 것은 경비원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의 제1항 중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으로 개정하여 경비업무의 범위에서 방어를 위해 가해진 위력이나 물리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9> 경비원의 위력범위 규정(안)

규정내용	비고
<p>▶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목적을 벗어나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4.4. 경비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신설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경비업법 제29조(형의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경비원에 대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58조 제1항(중상해),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제260조 제1항(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77조 제1항(중체포, 중감금), 제281조 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3조 제1항(협박),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한다.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경비원의 의무 조항에 상대되는 것으로 경비원에 대한 폭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약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경비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경비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안)

규정내용	비고
<p>▶ 제15조의5(경비원에 대한 폭력행위 금지등) 누구든지 근무 중에 있는 경비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아니된다.</p> <p>▶ 제29조(형의 가중처벌) 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3.6.7.></p> <p>②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13.6.7.></p> <p>③누구든지 근무 중에 있는 경비원에 대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58조 제1항(중상해),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제260조 제1항(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77조 제1항(중체포, 중감금), 제281조 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3조 제1항(협박),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p>	

5. 결 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연원이나 법적인 성격 면에서는 차이를 갖고 있지만 최소한 권리와 의무 면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향후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급히 도입하여야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최소한의 보장규정을 경비업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보장항목인 봉급과 수당을 표준화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산업의 예를 고려하여 임의규정 형식의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여 일단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상징적이라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 감정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경비원만의 특별한 법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행법 체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행위, 질문검색, 증거보전 등 최소수준에서 일반인들 보다는 좀더 확장된 범위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위력의 과시'인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유형, 그리고 행위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경비원의 의무 조항에 상대되는 것으로 경비원에 대한 폭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약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경비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국어위키백과사전
- [2]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1977.
- [3]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1977.
- [4] 네이버국어사전
- [5] 네이버어학사전
- [6] 정호경, "공·사법 구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일고찰," 법학논총 vol.23,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p, 205, 2006.
- [7] Carl Welmann, Real Rights, New York: Oxford Uni. Press, 1995.
- [8] Carl Welmann, A Theory of Rights, Rowman and Allanhekl, 1987.
- [9]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1977.
- [10] 이상규, '신고 행정법론(상)', 법문사, 1979.
- [11] 석중현,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선 주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pp. 612-613, 1995.
- [12]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하)', 청운사, 1982.
- [13]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3.
- [14] 백명희, "교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1977.
- [15] 헌법
-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7] 경찰관직무집행법
- [18] 경찰공무원법
- [19] 청원경찰법
- [20] 경비업법

[저자 소개]



김 계 원 (Kye-Won Kim)

1991 인천대학교 행정학사

2008 인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현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email: fall99@hanmail.net



서 진 석 (Jin-Seok Seo)

1987 인천대학교 행정학사

2000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현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email: jsseo@joongbu.ac.kr